

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설치 및 운영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학문의 발전과 학제간 융합화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관련된 학과(부) 또는 전공들이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대학원 협동과정(이하 “학과간 협동과정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요건)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기존 학과(부) 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일 것
2. 해당 분야의 충분한 연구 및 교육 능력을 가진 교수가 있거나 확보가 가능할 것
3.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할 것

제3조 (신청 및 승인)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하려면 2개 이상의 학과가 서로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요청하며, 대학원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 (전공 설치) 학과간 협동과정에는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.

제5조 (주임교수 및 지도교수) 각 학과간 협동과정에는 학사를 담당할 학과(전공) 주임교수 및 개별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) ① 각 학과간 협동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과간 협동과정 주임교수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사에 관한 내규를 정하며, 과정 학생의 교과이수와 논문작성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.

제7조 (장학금 지원)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의 장학금은 소속 대학원의 장학규정에 따라 지원한다.

제8조 (준용 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학사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